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성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235 발의연월일: 2025. 3. 21.

발 의 자:정성국·서천호·곽규택

이헌승 · 김용태 · 김대식

백종헌 • 조정훈 • 김예지

최형두 • 서지영 • 최보유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판매 등 청소년 유해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 ·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등이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.

그러나 친권자등의 범위에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청소년 유해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, 그 사실의 통보 대상이 불분명하여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개정안은 청소년의 원인 제공 사실 통보 대상인 '친권자등'에 일정기간 이상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50조).

법률 제 호
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제1항 중 "친권자등"을 "친권자등(해당 청소년을 보호하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 중 일정기간 이상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선도·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)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소년이 제16조제1항, 제28조제1항, 제29조제1항·제2항,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50조(선도・보호조치 대상 청 제50조(선도・보호조치 대상 청 소년의 통보) ① 여성가족부장 소년의 통보) ① -----관,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관 할 경찰서장은 제16조제1항, 제 28조제1항, 제29조제1항 • 제2 항,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 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 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 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 -----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등(해당 청소년을 보호하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1조 한다. 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 중 일정기간 이상 청소년을 보호 하는 시설로서 여성가족부령으 로 정하는 시설의 장을 포함한 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---.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